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3574호

시행일자 2019. 6. 25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6호 (2019.6.24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2호(2019.5.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가. 주요개정내용 :

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493품목(별지1)

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
49품목(별지2~3)

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4품목(별지4)

나. 시행일 : 2019. 7. 1

○ 별지3 : 2020.6.1.

○ 별지4 : 2019.12.31.

다. 추가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호 (044-202-2756)

붙 임 : 고시개정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